

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
【교통행정과】

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537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2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교통행정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용어변경 (안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 : 생략

가. 법적근거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2호 및 「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제1항제3호

나. 사 유 :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관련협의 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 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교통건설국 건설안전과

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3호 중 “보육시설” 를 “어린이집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교통행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교통행정과장 윤영균
	팀장 직위·성명	교통시설팀장 임국남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임국남 (790-5480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보육시설”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 10조에 따른 <u>보육시설</u>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)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 -----<u>어린이집</u>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《 관계법령 발췌서 》

【영유아보육법】

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“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3. 법인·단체등 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)
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6. 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